

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4013-1905-0355-2]

1. 건물정보

건물명	서울시청서소문별관
건물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)
안전관리자	장 * 용 (교육유효만료일자 2019.09.09 일까지)

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862,840원)

국민은행	19649078123886	기업은행	08207053197457
농협은행	79013419125426	신한은행	56211158024916
우리은행	21619153018552	우체국	81081180303071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.
 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)

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정기검사	검사대수	6대	총수수료	862,840원					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영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
1	2019.05.18	1(별관1동-1)	0015-331	권상식	소방구조용	16	140,000	0	0	14,000
2	2019.05.18	2(별관1동-2)	0015-332	권상식	소방구조용	16	140,000	0	0	14,000
3	2019.05.18	3(별관1동-3)	0015-333	권상식	승객용	15	131,600	0	0	13,160
4	2019.05.18	4(별관1동-4)	0015-334	권상식	승객용	15	131,600	0	0	13,160
5	2019.05.18	5(별관1동-5)	0015-335	권상식	승객용	15	131,600	0	0	13,160
6	2019.05.22	13(주차장-1)	0015-336	권상식	장애인용	2	109,600	0	0	10,960
합계							784,400	0	0	78,440
총합계							862,840			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신청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설치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1조, 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」 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 수수료(73,000원 VAT별도)는 별도 산정됩니다.

시험하중이 2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경우 신청인께서 별도의 분동을 준비하여야 하며, 2,000kg 이하인 승강기도 직접 분동을 준비할 경우 분동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문의 : 고객지원센터 1566-1277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

